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59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전진숙 · 이수진 · 김남희
양부남 · 김정호 · 이인영
전용기 · 남인순 · 정진욱
이개호 · 허종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사회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1인가구는 특정 취약집단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 과정에서 일정 기간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생활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어,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그간의 1인가구 정책은 고독사 예방이나 위기 상황 대응 중심으로 추진되어, 1인가구 전체를 포괄하는 보편적 생활 지원체계로 발전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1인가구를 위험 또는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자립적 생활 주체이자 사회적 존재로서의 권리 보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내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독립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 형태가 아닌 하나의 보편적인 생활 단위로 명확히 위치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공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1인가구가 연령·소득·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제1항).

나. 1인가구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생애주기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주거·일상·건강·돌봄·안전 등 생활 전반에 관한 공공서비스 연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관계망 형성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35조의3제2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제3항).

라.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인력 배치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의3제4항).

마. 조문 신설에 따라 관련 조문의 조문 번호를 정비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7항제9호의2 중 “제35조의4제1항”을 “제35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각각 제35조의4 및 제35조의5로 하고,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5조의4(종전의 제35조의3) 중 “센터 또는 가족센터”를 “센터, 가족센터 또는 1인가구지원센터”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1인가구지원센터”로 한다.

제35조의3(1인가구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 등을 위하여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1인가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1인가구의 주거·일상·건강·돌봄·안전 등 생활 전반에 관한 공공서비스 연계
3.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관계망 형성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4. 그 밖에 1인가구의 자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인력의 배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⑥ (생 략)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⑥ (현행과 같 음)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한다.	⑦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9의2. <u>제35조의4제1항에</u>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 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지원	9의2. <u>제35조의5제1항</u> ----- ----- -----
10. · 11. (생 략)	10. · 11. (현행과 같음)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35조의3(1인가구지원센터) ①</u>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u> <u>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u> <u>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 등을</u> <u>위하여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u> <u>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1인가구지원센터는 다음 각</u> <u>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 <u>1.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자립</u> <u>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정</u> <u>보 제공</u> <u>2. 1인가구의 주거·일상·건강</u>

	<u>· 돌봄 · 안전 등 생활 전반에 관한 공공서비스 연계</u> <u>3.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관계망 형성 및 지역 사회 참여 지원</u> <u>4. 그 밖에 1인가구의 자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u> <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④ 그 밖에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인력의 배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3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u> 이 법에 따른 <u>센터 또는 가족센터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u> <u>제35조의4(사업수행실적 평가)</u> (생 략)	<u>제35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u> -----<u>센터, 가족센터 또는 1인가구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1인가구지원센터-----.</u> <u>제35조의5(사업수행실적 평가)</u> (현행 제35조의4와 같음)